

##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1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4. 10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가.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행안부 훈령 제130호, 2020. 5. 1. 시행) 개정으로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변경 전 제명을 변경 후 제명으로 조문 변경(안 제1조 ~ 제13조)
  -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

### 3. 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생략(「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)
- 라. 입법예고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4호)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제1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# 제2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# 제3조(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# 제4조(「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# 제5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**제6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

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**제7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**

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**제8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의 개정)**

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**제9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」의 개정)**

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**제10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

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**제11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」의 개정)**

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**제12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의 개정)**

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**제13조 (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**

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 1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(혁신교육과)

현행	개정안
<p>제3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의 위탁운영과 재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각각 따른다.</p>	<p>제31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.</p>

### 2.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(혁신교육과)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사용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에 따른다.</p>	<p>제7조(사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.</p>

### 3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(회계정보과)

현행	개정안
<p>제32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「<u>울산광역시</u></p>	<p>제32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</u></p>

<p>중구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할 수 있다.</p>	<p>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 -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4. 「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」 (회계정보과)

현행	개정안
<p>제4조 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~ ③ (생략) ④사용료납입고지서는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4조 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</p>

5.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 (민원지적과)

현행	개정안
<p>제5조의2(원인자부담)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의 세입·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.&lt;조문신설 2011. 3. 28&gt;</p>	<p>제5조의2(원인자부담) ----- ----- 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 -----</p>

6. 「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」 (노인장애인과)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<u>울산광역시 중구</u></p>	<p>제10조(준용) ----- -----</p>

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, 「 <u>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 」 등을 준용한다.	----- 「 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 」-----
---	---

7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(노인장애인과)

현행	개정안
제16조(관계규정 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 <u>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 」을 준용한다.	제16조(관계규정 준용) ----- ----- ----- 「 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 」----- -----

8. 「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(여성가족과)

현행	개정안
제25조(준용규정)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 <u>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 」을 준용한다.	제25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「 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 」----- -----

9. 「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」 (환경위생과)

현행	개정안
제13조 (관계규정의 적용 등) ① (생략) ②제1항 이외의 사항은 「 <u>울산광</u>	제13조 (관계규정의 적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「 <u>울산광</u>

<p>역시 <u>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표준으로 적용한다.</p>	<p>역시 <u>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 -----.</p>
--	---

10. 「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(환경미화과)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(준용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또는 「<u>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 및 「<u>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23조(준용) ① ----- ----- 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

11.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」(건설과)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 (사무취급 예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6조 (사무취급 예) ----- ----- 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 -----.</p>

12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(건축과)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 공동주택의 보조에 관</p>	<p>제12조(준용) ----- -----</p>

<p>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----- 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.</p>
--	---

13. 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(건축과)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.</p>

#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  
: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2. 미첨부 사유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13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며 선언적·권고적 내용으로 비용추계에 어려운 점이 있어 비용추계서 미첨부

## 3. 작성자

- 소 속: 기획예산실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이 름: 권규철
- 연락처: (052)290-3091